

2025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공모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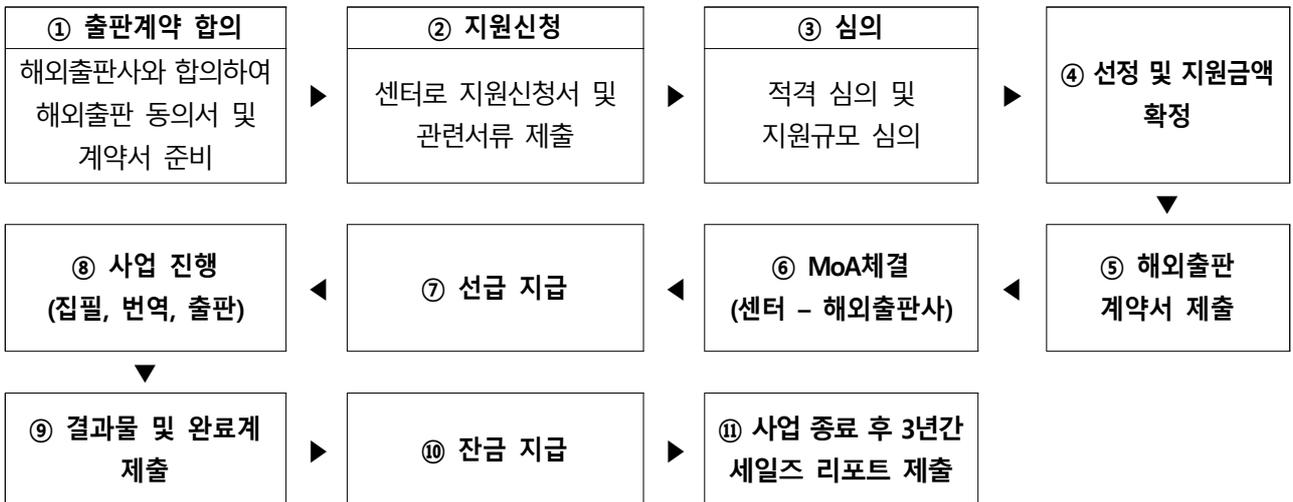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외 전문가 및 연구자의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 공모요강

구분	내용						
공모명	한국미술해외출판 지원						
공모기간	2025년 1월 17일(금) ~ 2025년 2월 28일(금) 16:00(한국시간)						
심의일정	4월 예정 ※변동될수 있음						
지원대상	한국작가 또는 한국미술 개론서를 외국어로 해외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저자 대학 및 연구소, 출판사 등						
지원규모	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내용	집필비, 번역비, 감수비, 출판 실비(인쇄, 디자인, 이미지 저작권 비용 등)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집행 및 출판사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출판사와 사전 협의 후 동의서(지정양식) 제출 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해외출판 계약서</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출판사 동의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제출 생략, 저자와 계약서 제출 필수 ※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하고 선정된 경우, 센터-출판사 협약 체결 이전까지 (6/30)계약서 미제출 시 지원 철회됨 - 전체 출판 비용 내 최대 80%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며, 출판사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지원신청 금액 내 저자 집필비용 책정 권장, 출판 계약 내 저자 인세 및 로열티 책정 권고 - 다른 기관에서 동일 도서에 대한 집필 및 번역, 출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해야 함. 한국 타 정부 기관의 국고보조금 중복수령 불가 - 종이책 출판은 필수, 전자책 출판은 선택사항(가산점 부여)임 ※ 종이책 초판 인쇄 부수 300부 이상이어야 함. 단, 전자책 출판을 하는 경우 초판 인쇄 부수 합의 가능 ※ 출판부수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서류	있는 경우	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	없는 경우	해외출판사 동의서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서류						
있는 경우	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						
없는 경우	해외출판사 동의서						
사업기간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하나 사업기간 내 출판이 완료되어야 함 (1개년) 선정 시 ~ 2025.12. (2개년) 2026.1. ~ 2026.12.						

	(3개년) 2027.1. ~ 2027.12.	
선정방식	적격 및 지원금 심의(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금 지급방법	- 저자-해외출판사 간의 출판 계약을 근거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외출판사와 별도 협약(MoA)을 체결한 후 해외출판사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선금/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 (선금)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 확인 후 지원금의 70% 지급 (잔금) 출판 완료 후, 출판 도서 및 완료계 제출 확인 후 지원금의 30% 지급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국영문) ※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제출 ② ※ 지원자 유형에 따라 (저자) 이력서 (출판사) 출판사 신고필증, 출판사 소개서 (단체/기관) 사업자등록증, 단체/기관 소개서 ③ 해외출판사 동의서(지정양식) ※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제출 생략. 저자와의 계약서 제출 ※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 및 계약서 제출 필수이며, 미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④ 목차 및 내용구성(안)과 요약본(5매 내외) ※ 지원신청서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⑤ 저자 이력서 ⑥ 해외 출판사의 최근 3년간 포트폴리오(시각예술 출판 중심)
	선택	⑦ 해외출판 계약서 ※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제출 ※ 예산계획 및 수익관련 협의내용, 출판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정 시, 6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취소됨

[사업진행도]



II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최대 5,000만원 이내 출판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 항목 선택 가능
- ※ 지원신청금은 전체 예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

2) 지원항목

- 집필비, 번역비, 감수비, 이미지 저작권, 디자인, 인쇄, 출판사 기획비 등

3) 지원금 산출근거

- 집필·번역·감수 비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며, 그 외 항목은 페이지 수, 도판, 인쇄부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한 후 세부 산출내역 제출

지원항목	최대신청가능액	산출기준
영문원고 집필 및 번역	21,600,000원 (A4 100매)	A4 1장(1,200자 기준) 216,000원, 200자 원고지 1매당 36,000원 ※ 집필비용과 번역비용 포함 최대 책정 금액
감수	10,800,000원	번역료의 50%까지 책정 가능
기타	50,000,000원	이미지 사용료, 디자인, 인쇄비 등 실비 ※ 페이지 수, 도판, 인쇄부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
기획비	지원신청 금액의 10% 상한	

※ 유통, 홍보, 운송 비용 등은 지원 항목이 아님

4) 지원조건

- 해외출판사와 해외출판에 대해 협의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도서
 - 해외출판 계약서가 있는 경우 : 해외출판사 동의서와 계약서 모두 제출
 - 해외출판 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

※ 예산계획 및 일정, 지원금의 지급 및 집행, 결과보고 등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과 출판사 의무사항에 대해 출판사와 사전 협의 후 해외출판사 동의서 제출 필수(지정양식)

※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제출 생략

※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하고 선정된 경우, 6월 30일까지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정해진 기간 내 계약서 미제출 시, 지원 철회됨)

- 전체 출판 비용 내 최대 80%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며, 출판사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지원신청 금액 내 저자 집필비용 책정 권장, 출판 계약 내 저자 인세 및 로열티 책정 권고
- 다른 기관에서 동일 도서에 대한 집필 및 번역, 출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신청

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해야 함.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종이책 출판은 필수, 전자책 출판은 선택사항(가산점 부여)임

※ 종이책 초판 인쇄 부수 300부 이상이어야 함. 단, 전자책 출판을 하는 경우 초판 인쇄 부수 협의 가능

※ 출판부수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5) 사업기간 : 최대 3년까지 책정 가능

구분	사업기간	비고
1차년도	선정 시 ~ 2025.12.	- 사업기간 내 결과물 제출 필수
2차년도	2026.1. ~ 2026.12.	- 사업기간을 다년으로 설정할 경우,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에 일정과 계획을 상세히 작성
3차년도	2027.1. ~ 2027.12	

6) 지원금 지급방법

- 저자-해외출판사 간의 출판 계약을 근거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외출판사와 별도 협약(MoA)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을 7:3의 비율로 분할 지급함. 선금은 해외출판 계약서 수령 이후, 잔금은 출판도서 및 완료계 수령 이후 지급함

※ 본 지원금은 출판사로 지급되며 개인이 수령 및 집행할 수 없음

III 공모 신청 및 심의 안내

1) 공모기간 : 2025년 1월 17일(금) ~ 2025년 2월 28일(금) 16:00(한국시간)

2)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art-trans@gokams.or.kr

3)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 형태로 제출

구분	내용
도서 출판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국영문) ※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제출 ② 지원자 유형에 따라 (개인) 신청자 이력서 (출판사) 출판사 신고필증, 출판사 소개서 (단체/기관) 사업자등록증, 단체/기관 소개서 ③ 해외출판사 동의서(지정양식) ※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제출 생략. 그 외 경우는 제출 필수이며,

		미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④ 목차 및 내용구성(안)과 도서요약본(5매 내외) ※ 지원신청서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⑤ 저자 이력서 ⑥ 해외 출판사의 최근 3년간 포트폴리오(시각예술 출판 중심)
	선택	⑦ 해외출판 계약서 ※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제출 ※ 예산계획 및 수익관련 협의내용, 출판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정 시, 6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취소됨

※ 지원신청서 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고지확인란 작성 필수

4) 심의 및 선정

○ 심의개요

구분	내용
심의방식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심의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① 기획의도 및 목적(40%) ② 출판사의 역량(30%) ③ 책자의 활용 및 기대효과(30%)

○ 심의일정 : 4월 예정

○ 결과발표 : 4월 예정/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IV 주요사항

신청자격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부대비비용 :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p style="text-align: center;">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사업 변경신청서, 완료계 등 서류 일체에 해외출판사 대표 또는 담당 편집자 서명 필수 • 사업기간 내 출판 완료 필수, 기간 외 출판 불가 시 지원금은 100% 환수 • 해외출판사는 협약 내 예산계획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직접 집행하며 사업 종료 후 완료계 제출, 출판도서 30부를 센터로 제출 • 사업 종료 후 3년간 세일즈 리포트 제출 • 출판/발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판/발행되었음을 판권란에 로고와 함께 표기(예시 : This publication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 표절원고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원고를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기간 이후에는 지원 신청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